

정부 및 유관기관 법령정보



기술표준원 공고 제2008-271호

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08. 9. 12.

기술표준원장

전기용품안전기준및운용요령개정(안) 입안예고

1. 개정 취지

전기용품 안전관리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, 전기기기분야의 관련 국제표준규격인 K60335-2-6(5.1)(거치형 조리레인지, 호브, 오븐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개별요구사항) 등 6종을 국제규격(IEC)과 부합화하여 안전기준으로 제정하고, 동 기준을 전기용품 안전기준 및 운용요령에 추가하고자 함.

2. 주요 내용

가. [별표1] 강제적용 안전기준에 K60335-2-6(5.1)(거치형 조리레인지, 호브, 오븐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개별 요구사항)을 제정하여 기존 안전기준과 병행 적용

나. [별표1] 강제적용 안전기준에 K60335-2-7(6.1)(세탁기의 개별요구사항)을 제정하여 기존 안전기준과 병행 적용

다. [별표1] 강제적용 안전기준에 K60335-2-21(5.0)(전기온수기에 대한 개별요구사항)을 제정하여 기존 안전기준과 병행 적용

라. [별표1] 강제적용 안전기준에 K60335-2-43(3.1)(전기 의류 건조기 및 타올걸이의 개별요구사항)을 제정하여 기존 안전기준과 병행 적용

마. [별표1] 강제적용 안전기준에 K60335-2-47(4.0)(상업용 전기 끓임팬의 개별요구사항)을 제정하여 기존 안전기준과 병행 적용

바. [별표1] 강제적용 안전기준에 K60335-2-7(2.0)(화장실용 전기기기의 개별요구사항)을 제정하여 기존 안전기준과 병행 적용

3. 문 의

제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, 업체 또는 단체는 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기술표준원 연락처

- 주 소 :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
- 전화번호 : 02-509-7242 (FAX : 02-507-6657)
- 홈페이지 : <http://www.kats.go.kr>
- 이용방법 : 홈페이지접속 → 기술표준원 소식 → 고시/공고

